

Human Information

: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정리 대외홍보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요지(7)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지 (제24차~26차)

제24차 개정<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개정이유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제거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정비하고, 특수 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사업주의 유해·위험요인 분석·평가 및 관리(법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안 제27조제1항)
- 1) 현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등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환경의 변화 및 사업장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의 관리기준을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지도·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2)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평가하여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도록 함.
- 3) 사업장 스스로 자기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평가·관리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높이고 산업재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② 석면 해체·제거 시의 안전·보건조치(법 제38조의 2부터 제38조의5까지 신설)

- 1) 현재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제거할 때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을 철거할 때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없이 철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 2)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자는 작업 전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 함유 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함.
- 3)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하는 근로자를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③ 건강진단기관 평가 등(법 제43조제10항 신설)

- 1) 건강진단기관이 사업주에게 부담이 없게 건강진단 결과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어 제도 본래의 목적인 근로자의 직업병 조기발견 기능이 미흡함.
- 2)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공표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3) 건강진단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한 자기노력을 유도하여 건강진단의 직업병 발견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장에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건강진단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④ 역학조사 정보요청(법 제43조의2제3항 신설)

- 1) 업무상 질병의 특성상 질병의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전·현직 근로자 개인의 건강정보 등이 필수적이나 건강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역학조사가 지연



되거나 제한됨.

- 2)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영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3) 신속하고 내실 있는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직업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제25차 개정<법률 제9796호, 2009. 10. 9.>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





도록 하며, 종전 자체검사만을 수행하여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 자율검사의 전면 시행에 따른 부실검사의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건설한 민간지정검사기관들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는 금번 개정 법률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주요내용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이 법 제7조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두고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7조 삭제

및 법 제8조).

- ②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자체검사만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가 용이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 등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번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

제26차 개정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 12. 29, 법률 제9847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⑨ 부터 ⑩까지 생략

제22조 생략